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김 성 환

◉대통령령 제36435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의보와 경보”를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중대경보는 제8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폭염(열대야를 포함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보의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

1. 호우, 대설 등 특보

종 류	주 의 보	경 보
가. 호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나. 대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한다.
다.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2)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라. 강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
마.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바.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 한파	10월 ~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	10월 ~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

	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상될 때 2)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아. 풍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자.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비고

1. “실효습도”란 물체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습도를 가중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2. “천문조”란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引力)에 의하여 일어나는 조수간만의 차를 말한다.

2. 폭염 특보

종 류	주 의 보	경 보	중 대 경 보
가. 폭염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일 최고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열대야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특보의 단계에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폭염 중대경보의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로 정하며, 폭염 특보의 종류에 열대야를 신설하여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밤 최저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열대야 주의보를 발표하도록 하는 한편,

한파와 폭염의 경우 사문화된 특보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